



제416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79호)

2024.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3

I. 개요

1. 김선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7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선민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6. 12.
- (3) 회 부 일 : 2024. 6. 1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하여 기
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실직 또는 휴
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
음.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
이 있음. 이러한 이유로 정부도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보험료 지원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
기간을 확대하여 연속적인 가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안 제100조의4).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현재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의 범위를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하고, 현행 12개월의 지원 기간 상한을 36개월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또는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

<u>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u> ② (생략)	<u>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u> 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2023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50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85만명이고, 그 중 394만명(57.5%)이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 상태로, 사각지대가 존재함.

- 지역가입자 685만명 중 306만명(44.7%)은 납부예외, 88만명(12.8%)은 장기체납 상태임.

- 연금보험료 중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음.

□ 저소득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사업은 2020년 1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¹⁾를 신설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2년부터 예산²⁾을 편성하여 시행 중에 있음.

1)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국민인 지역가입자로서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것. 다만,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아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재산 및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08-206)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년 예산액 265억 2,500만원(집행: 4만명 48억원), 2023년 예산액 382억 1,400만원(집행: 15만명 382억원), 2024년 예산액 399억 4,700만원

- 관련 유사 사업으로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대상의 보험료 지원사업과 저소득 사업장가입자 대상의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지원이 있음.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비교>

구분	지역가입자 대상		사업장가입자 대상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지원
도입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	농·어업인의 노후소득보장	저임금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암·계속가입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270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 요건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재산) 10억원 미만, (종합소득) 6,000만원 미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 4,300만원 미만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6만원)	보험료의 50% (최대 4.6만원/월)	사용자/근로자 부담분 80% (최대 약 18.7만원/월)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제한 없음 (일몰기한 '24.12.31)	최대 36개월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현행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대상은 납부재개자로 한정되어 있고, 지원기간 상한은 최대 12개월인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202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과정(재정계산위원회) 및 2024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 추진된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되었음.

- 사업장가입자와 비교 시 지역가입자는 평균 가입기간이 짧고 연금수급권 인정을 위한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률이 낮은 상황임.

<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vs 사업장가입자 >

구분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평균 가입기간	52개월(납부예외 포함)	125개월
최소가입기간(10년) 충족률	15.2%(납부예외 포함)	46.5%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500여명의 시민대표단의 87.3%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대해 동의하였음.³⁾

< 2024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공론화 경과 >

기간	2024.1.31.(공론화 출범식). ~ 2024.4.30.(연금특위 결과보고)
추진 체계	공론화위원회(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 (총 9인) 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유경준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및 김성주 연금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포함하여, 연금정책 전문가 2인, 숙의절차 및 갈등관리 전문가 3인, 통계조사 전문가 2인, 대국민 소통 전문가 1인 공론화자문단 - (총 11인)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6인(재정안정 3인, 소득보장 3인), KDI 등 국책기관 전문가 4인, 법률 전문가 1인으로 구성 공론화지원단 - (총 22인) 연금특위(11인, 단장 진선희 수석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공보기획실(2인), 예산정책처(2인), 입법조사처(1인), 미래연구원(1인), 보건복지부(3인), 국민연금공단(2인)으로 구성, 공론화 실무 지원 수행사: 한국리서치 컨소시엄 - 한국리서치(조사 및 총괄), 갈등해결&평화센터(숙의 절차), 비전 메이커플러스(디자인·행사)로 구성되고, KBS가 협력사로 참여
공론화 의제	모수개혁 및 구조개혁에 관한 총 7개 의제 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보험료율, ② 수급연령 및 의무가입 상한연령, ③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④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⑤ 직역연금 개편, ⑥ 세대간 형평성 개선 방안, ⑦ 퇴직급여 개편 방안

3) 2024년 4월 21일에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문항

문3-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논의되는 다음 방안에 대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다	대체로 동의 한다	별로 동의하 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 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3.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1	2	3	4	5

공론화 절차	이해관계자 중심의 1단계 숙의를 통해 의제구체화 -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의제숙의단(총 36인)을 구성하고, 의제를 시민참여형 공론화에 부칠 수 있는 형태로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하기 위하여 재정안정론·소득보장론 양측 전문가들과 함께 2박 3일간 숙의를 진행(의제숙의단 워크숍)하고, 의제숙의단 합의로 의제별 대안을 개발 시민대표 500여명에 의한 2단계 시민참여형 공론화 - 임의추출된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63명 대상 전화면접조사(CATI)를 통해 표본추출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1단계 숙의를 통해 구체화된 의제와 의제별 대안에 대하여 학습 및 토의하여 공론을 형성 - '24.4.13·14, 20·21 4일간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를 KBS의 5개 지역 방송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분산 개최(다원생중계)하고, 양측 입장의 전문가 발제, 질의응답(시간 통제)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숙의 과정을 거침 - 시민대표단 선발을 위한 기초조사(1차 조사), 숙의토론회 직전(2차 조사) 및 숙의토론회 직후(3차 조사)의 3단계 조사를 통해 시민대표단의 학습·토론을 통한 숙의 결과를 확인
-----------	---

□ 정부는 2023년 10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모수개혁 및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하고,

이와 연계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을 납부재개자에서 전체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넓히고 지원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 >

구분	현행	개선안
지원 대상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사업중단·실업·휴직 등)	납부재개자 + 저소득 지역가입자
재산 소득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사업·근로소득) 1,680만원 미만	현행 + 일정소득 수준 이하
지원 수준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만원)	보험료의 50%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최대 36개월

자료: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은 정부의 제5차 재정계산 과정과 제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및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 및 공론조사 참여자 사이에서 큰 이견 없이 지지를 받은 방안으로,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도 추진사항으로 포함된 만큼,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집행에 관한 과제로서,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분포 및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어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⁴⁾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정확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과거 2022년 납부재개자에 한정된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예산 편성 당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수와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어 시행 첫해 집행률이 저조

4) 개정안에 대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50%)하였던 전례가 있는바,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사각지대의 상세 현황을 조사하고, 정확한 재정추계를 실시하며, 면밀한 제도설계와 사업평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다. 관계 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신중검토

-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
- 다만, 구체적 지원 방안, 시기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개혁 방안 논의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또한, 2020년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근거를 입법할 때 부칙*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3년 시행하고 효과성을 평가하기로 한 입법연혁을 고려할 필요
- * 「법률 제16867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연금보험료 지원사업 평가 보고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0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지원한 날⁵⁾부터 3년이 경과한 후⁶⁾,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03

5) 2022년 7월 1일

6) 2025년 7월 1일